

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기재사항, 색상 및 재질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재사항 변경
 - 의원신분증 → 장성군의원증
 - 장성군의회의원신분증 → 장성군의회의원
 - 의회로고 한자 → 한글
- 색상 변경
 - 황색 바탕 → 하얀 바탕

- 의회로고 색상 하늘색 → 금색
- 재질 변경
 - 종이 재질 → 아크릴 재질

4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6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5. 규칙안(별표) : 붙임

6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 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 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[별표 1]

(전 면)

장성군의원증	1,2 cm
① 사 진	3,8 cm
② 신분증 번호	7,8 cm
③ 의 원 명	2,8 cm
장 성 군 의 회	

(후 면)

5,3 cm	
장성군의회의원	
성 명	
생년월일	
의회	7,8 cm
위 사람은 장성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	
년 월 일	
장성군의회회장	

(주) 1. 위의 ①②③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①사진(가로 5.2cm × 세로 3.8cm)

②의원신분증 번호

③의원 성명

2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글 자 의 구 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
장성군의원증	16포인트	고 딕 체
장성군의회	16포인트	고 딕 체
장성군의회회장	16포인트	고 딕 체
위 사람은을 증명함	10.5포인트	고 딕 체
기타	8포인트	명 조 체

3. 재질은 아크릴로 한다.

4. 신분증은 P.V.C(투명한 것)으로 포장한다.

5. 신분증은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도록 한다.